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건소 설치 사유 추가 등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809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18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경 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보건소 설치 기준 변경(임호선의원안)	3
2.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김미애의원안)	8
※ 참고자료	14
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현황	14
2. 응급·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역 현황	15

I. 개요

1.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8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3. 11.
- (3) 회 부 일 : 2025. 3.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인구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군·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2.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18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7. 1.
- (3) 회 부 일 : 2025.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 전국 94개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보건소 설치 기준 변경(임호선의원안 제10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인구 30만 명 초과 등’의 현행 보건소 설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u>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u>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 ----- ----- ----- ----- <u>시·군·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지역보건법」은 2021. 8. 17. 개정(2022. 8. 16.) 개정으로 보건소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30만명’이라는 기준의 설정 근거는 행정구 설치 기준과 대도시 보건소당 평균 관할인구를 고려한 것임.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확대하였음¹⁾.

「지역보건법」(2021. 8. 17. 법률 제1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역보건법」(2021. 8. 17. 법률 제18418호 개정, 2022. 8. 18. 시행)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u>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u>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u>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u>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u> ② (종전과 같음)
「지역보건법 시행령」(2022. 8. 9. 대통령령 제32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역보건법 시행령」(2022. 8. 9. 대통령령 제32864호 개정, 2022. 8. 18. 시행)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 ①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시·군·구의 「 <u>보건의료기본법</u> 」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u>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u>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2023년 12월 기준 시·군·구²⁾당 보건소(보건의료원) 수가 2개 이상인 곳은 경기 고양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9곳임.

* 현행법에 따른 ‘인구 30만명 초과’ 기준 이외에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한 지역에는 ‘서귀포’시가 있음³⁾.

- 1) 이에 따라 경기 부천시·평택시·남양주시, 경북 구미시, 제주시 및 제주 서귀포시 등 6개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었음.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의미함(「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3) 국회 예산정책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809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보건소 추가 설치 현황 >

시도	시군구	보건소 (보건의료원) 수	총인구 수	보건소당 관할 인구
경기도	고양시	3	1,067,292	355,764
경기도	남양주시	2	731,138	365,569
경기도	부천시	3	767,354	255,785
경기도	성남시	3	911,807	303,936
경기도	수원시	4	1,191,500	297,875
경기도	안산시	2	617,963	308,982
경기도	안양시	2	559,999	280,000
경기도	용인시	3	1,088,527	362,842
경기도	파주시	2	514,717	257,359
경기도	평택시	2	599,580	299,790
경기도	화성시	3	975,045	325,015
경상남도	김해시	2	531,188	265,594
경상남도	창원시	3	997,306	332,435
경상북도	구미시	2	403,620	201,810
경상북도	포항시	2	490,857	245,42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633,668	316,834
충청남도	천안시	2	660,981	330,491
충청북도	청주시	4	855,097	213,774
제주특별자치도		6	668,205	111,368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현황보고'(23. 12. 기준)

□ 한편, 인구 30만명 초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된 「지역보건법」이 시행된 2022. 8. 18. 이후 인구 30만명이 넘고 보건소가 1개만 설치된 행정구역 중 실제로 보건소가 추가 설치된 지역은 김해시(김해시 서부 보건소), 양산시(양산시 웅상보건소) 등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30만명 인구 기준이라는 양적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30만 인구 기준’ 대신 ‘시·군·구의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별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인구 30만명 초과 외에,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입법취지 달성은 가능한 측면도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추가 설치 시 인구 외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등의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규정으로도 인구 수 및 해당 지역의 행정적·지리적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 설치가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2.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김미애의원안 제15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지역 내 어린이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가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5조의2(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어린이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에 어린이환자를 진료하는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현황 등 소아 진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u> <u>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에 대하여 야간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응</u>

급약품 확보비용, 상시 개방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에 제1항에 따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개정안은 지자체로 하여금 어린이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에 어린이환자를 진료하는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 아울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현황 등 소아 진료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2024년 46억 6,000만원, 2025년 95억 6,000만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는 것
2. 소아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 실적을 갖추는 것
3.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

② ~ ⑤ (생략)

□ 이에 따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설치되어 2025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17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바,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군·구(행정구 구분)별 1개소(또는 그룹) 지정이 원칙이고, 만 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구(행정구 구분)에는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매 5만명마다 1개소 추가 지정이 가능한바,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⁴⁾.

< (전일 운영)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식 >

(단위: 만원)

야간/휴일 진료시간	41시간 이상 46시간 미만	46시간 이상 51시간 미만	51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일반	160	180	220	280	360
활성화지역 (1.5배)	240	270	330	420	540
관심지역 (2배)	320	360	440	560	720

* (소아진료 활성화지역) 국가포털통계 시·군·구(행정구 구분) 인구 통계상 만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미만인 시·군·구

* (소아진료 관심지역) 소아진료 활성화지역 중 응급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면서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인 시·군·구

< (일부요일 운영 특례)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식 >

(단위: 만원)

야간/휴일 진료시간	41시간 이상 46시간 미만	46시간 이상 51시간 미만	51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활성화지역	75	100	125	160	200
관심지역	100	135	165	215	265

※ 전일 운영이 아니면서,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달빛어린이병원 중 토·일 10시 이전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토·일 각각 3,000만원씩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2025. 1.

4) 진찰료에 ‘야간진료관리료’를 청구하는 수가 가산도 적용됨.

- 하지만,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강남구·송파구에는 각 2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최다 31곳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에는 전체 3개(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경북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등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한 실정임(참고자료 1 참조).
- 이러한 의료 현실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 소아 진료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자체로 하여금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야간 어린이환자 진료 공백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봄.
- 그 외, 국가 차원에서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한 도심융합특구⁵⁾에 대한 경비 보조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된 규율 범위로 하는 법률인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미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해 보임⁶⁾.

5) 부산도심융합특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대구도심융합특구: 삼성창조경제캠퍼스, 경북대학교, 경북도청 후적지, 대남도심융합특구: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선화지구, 광주도심융합특구: 상무지구, 울산도심융합특구: 울산역세권개발사업, 울산테크노파크

6)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 지정 기준, 개소, 지원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파악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렵다고 하였음.

□ 개정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야간 소아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 해소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민간의료기관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지역보건법」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현재 응급 소아진료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및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정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정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행정적 지원, 협의체 등 지속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며, 지역 의료 문제는 소아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타법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 소아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역보건법」으로 유사한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⁷⁾.

문 의 처

02)6788-5500

7) 대한의사협회는 그 외에도 지자체가 의료기관 지정과 재정지원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재정지원여력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도심융합특구에 한정된 국가재정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아 의료 체계가 취약하고 지자체 재정 한계가 뚜렷한 경우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참고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현황

- **(목적)** 야간·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 진료 제공으로 경증 소아환자의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 응급실 과밀화 해소('14년~)
 - * (지정 현황) ('21) 30 → ('22) 31 → ('23) 57 → ('24) 101 → ('25.6월) 117개소
 - * ('25.6월 총 117개소) 서울(15), 부산(9), 대구(5), 인천(8), 광주(4), 대전(6), 울산(3), 세종(1), 경기(31), 강원(3), 충북(5), 충남(5), 전북(7), 전남(4), 경북(0), 경남(7), 제주(4)
- **(지정기준)** 진료의사 전문과목(소청과전문의 등), 소아환자 진료간수 및 비율,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장비·인력,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제공시간 등
 - * (운영시간) 평일 야간에는 최소 23시, 휴일에는 최소 18시까지 운영
 - 모범 운영시간 : (평일) 18시~24시, (토·일·공휴일) 09시~22시
 - 최소 운영시간 : (평일) 18시~23시, (토·일·공휴일) 10시~18시
- **(지원 내용)** 수가(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및 운영비* 지원
 - * (수가) 야간진료관리료 의원급 13,670원 ~ 23,080원, 병원급 11,940원 ~ 20,160원
야간조제관리료 4,170원
 - * (재정) 야간·휴일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최소 0.3억원~최대 7.2억원)
- **(지정 유형)** 운영요일에 따라 ▲일반 운영(주 7일, 72개소), ▲일부요일 운영(주 2일 이상, 38개소) 및 ▲연합 운영(2곳 이상 당번제, 4개소) 등
- **(지정 절차)** 의료기관 신청 → 관할 시·군·구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점검 등) 후 시·도에 결과 보고 → 시·도에서 최종 지정
- **(진료 실적)**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로 '21년 상반기부터 '23년 하반기까지 지속 증가 중
 - * ('21.上) 25만명 → ('21.下) 42만명 → ('22.上) 74만명 → ('22.下) 77만명 → ('23.上) 88만명 → ('23.下) 125만명 → ('24.上) 145만명 → ('24.下) 194만명

[참고2]	응급 ·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역 현황
--------------	-----------------------------

□ **응급의료취약지**(총 98개소, 「공공보건의료법」) * **소아청소년 취약지('24)**

구분	개소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98개)
1.인천	2	강화군, 옹진군
2.경기	5	가평군 , 동두천시, 양평군 , 여주시, 연천군
3.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4.충북	8	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영동군 ,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u>충주시</u>
5.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6.전북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 <u>부안군</u> ,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7.전남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8.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9.경남	14	<u>거제시</u>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u>사천시</u> , 산청군, 의령군, <u>창녕군</u> , <u>통영시</u> ,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0.제주	1	서귀포시

※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운영 중인 시군구('25.5)